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고시 개정 수요 조사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개정과 관련됩니다.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4.4.27. 시행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3. 개정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붙임 2의 서식에 따라 '23.12.22.(금)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기관 주무부서에서 의견을 취합해 주시고, 개정의견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 또는 설명자료도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검역본부 고시 1부.

2. 동물복지 인증기준 개선 의견 서식 1부. 끝.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동물복지정책과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축산위생품질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축산물위생검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대구사무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창원사무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장(축산물위생검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평택사무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청주사무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천안사무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장(축산물위생검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김포공항사무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용인사무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속초사무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장(축산물위생검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광주사무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전주사무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장(축산물위생검역과장),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장), 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 인천광역시(농축산과장),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생명농업과장), 대전광역시(농생명정책과장), 울산광역시(농축산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동물위생방역과장), 경기도지사(동물복지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지사(축수산과장), 충청남도지사(축산과장), 전라북도지사(축산과장), 전라남도지사(축산정책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축산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국립축산과학원장(동물복지연구팀장), 가금연구소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재단법인축산환경관리원장, 대한양계협회장, (사)전국한우협회,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사)한국낙농육우협회장,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사)한국육계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사)한국염소산업발전연구회, 한국동물복지축산협회

주무관

김양현

수의사무관

최일수

대결 2023. 12. 11.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4659

(2023. 12. 11.)

접수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 농림축산검역본부 (울곡동) 본관동
4층 동물보호과

/ <http://www.qia.go.kr>

전화번호 054-912-0516

팩스번호 054-912-0528

/ huni8952@korea.kr

/ 대한민국 공개